

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사업신청 및 수행기관 모집공고

2022년도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사업신청 및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7월 29일
남양주시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 사업내용 :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중
- 사업예산 : 7,162백만원 (전국)
 - * 신청사업 및 수행기관은 남양주시 자체 기준에 의하여 최종 선정하며 사업비 등은 국회 예산 확정 및 사업 선정 여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1. 7. 29.(목) ~ 2021. 8. 11.(수)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접수 (duque@korea.kr)
 -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중임에 따라 방문접수 지양
- 신청서류
 - 가. 【서식 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총괄)
 - 나. 【서식 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세부사업별 계획서
 - 다. 【서식 3】 사업계획 세부내용
 - 라. 수행기관 자격 증빙서류 (아래 <3.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의 자격> 참조)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 사회적기업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서 등

3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의 자격 :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다음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기관은 제외됨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 나.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마. 행정기관
- 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닌 경우 및 친목회·종친회 등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기관·단체 제외)
- 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자. 일반 영리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참여가 불가하나, 공익활동 목적의 전담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참여 가능

□ 수행기관의 요건

- 가. 해당 운영기관의 설립목적, 사업 등이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수행과 관련이 있을 것
- 나.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다.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라.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마.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바. 기타 남양주시가 정하는 운영·수행기관 선정요건에 저촉되지 않을 것 등

4

사업분야 및 기준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분야

경영 전략 (100)	101. 기업비전/중장기전략	IT 정보화 (700)	701.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102. 구조조정		702. 포토샵 및 일러스트 등
	103. 산업/기업분석		703. 동영상 제작
	104. 사업계획		704. IT시스템/보안통제
	105. 경영컨설팅		705. 홈페이지제작 등
	106. 기타 경영전략		706. 기타 IT정보화
마케팅 홍보 (200)	201. 광고홍보전략	법률 법무 (800)	801. 생활법률 관련
	202. 디자인 상표		802. 분쟁조정
	203. 유통전략		803. 국제법률
	204. 매장구성전략		804. 기업법률
	205. 고객/서비스전략		805. 국내외소송
	206. 프렌차이즈		806. 인수합병 등
	207. 가격전략		807. 기타 법률법무
	208. e-비즈니스	문화 예술 (900)	901. 공연 및 전시활동
209. 기타 마케팅 홍보	902. 행사기획 및 진행/보조		
인사 노무 (300)	301. 기업문화	행정 지원 (010)	903. 사진촬영
	302. 조직혁신		904. 관광안내
	303. 조직관리		905.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해설
	304. 인력관리		906. 기타 문화예술
	305. 노사관리		011. 일반사무지원
	306. 성과평가		012. 문서관리
	307. 직원만족	013. 자료정리	
	308. 기타 인사노무	014. 기타 행정지원	
재무 회계 금융 (400)	401. 재무관리/분석	교육 연구 (020)	021. 초중고 학습지도
	402. 분쟁관련		022. 예체능 지도
	403. 회계관리		023. 특수교육
	404. 세무관리		024. 진로지도교육
	405. 자금조달 등 기업금융		025. 조사연구
	406. 기타 재무회계금융		026. 기타 교육연구
외국어 (500)	501. 통번역	상담 멘토링 (030)	031. 청소년 상담
	502. 회화		032. 노인 상담
	503. 기타 외국어		033. 취업 상담
사회 서비스 (600)	601. 환경기술지원, 생태 복원		기타 (040)
	602. 의료보건	041. 요리	
	603. 응급재난구호	042. 체육	
	604. 사회복지	043. 미용	
	605. 기타 사회서비스	044. 기타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일자리 기준 : 수행기관은 참여자에게 경력·전문성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일자리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해당 업무와 관련된 경력 3년 이상 등의 전문성이나 직무능력이 필요한 일자리 일 것

-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일자리어거나 취미(친목)형, 단순형, 경력 비활용형 등의 일자리가 아닐 것

나.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단기 일자리가 아닐 것

* 예시1: 지역 내 기업 경영·인사 경험이 있는 퇴직인력을 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에서 채용하여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실시

예시2: 간호사 등 보건분야 자격이 있는 퇴직인력을 채용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 건강 돌봄 서비스 제공

다. 다음에 해당하는 일자리에 참여자를 참여시킬 수 없음

① 국비 보조를 받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일자리

* 중복 참여자의 지원금 등의 보조금은 환수 대상

② 상당한 경력 및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 노무활동의 일자리

* 주차장관리, 환경미화 등

③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일자리

④ 박람회·축제 등 일회성 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을 위한 일자리

* ○○축제, ○○박람회 개최 등

⑤ 특정기간을 단위로 시행되는 각종 통계조사와 같은 사업 수행에 관한 일자리

* 하수관로조사, 국공유재산실태조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등

⑥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와 무관한 특정 단체의 이익 등을 위한 사업을 위한 일자리

⑦ 참여자의 참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직한 사업이거나 1년 이내 이직한 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일자리

□ 수행기관은 보조금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함

- ① 참여자의 인건비
- ② 사업 운영비

가. 사업 운영비 사용기준

- (지급 기준) 자치단체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간접보조사업 또는 위탁으로 실시하는 경우 해당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대상으로 한 운영비를 포함하여 간접보조금 또는 위탁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① 인건비(수행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하나, 대표자는 전일제로 해당 사업에만 종사하며 해당 단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 ② 전화전가우편요금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지출
- ③ 사무실 임차료(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공간에 한정)
- ④ 집기류의 유지·보수비
- ⑤ 사무기기 임대료
- ⑥ 소모품 구입비
- ⑦ 업무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
- ⑧ 홍보비(기념품, 현수막, 팸플릿, 안내책자 제작 등 목적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하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⑨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간담회 개최 등 업무추진비
- ⑩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필요한 금액

- (사업 운영비 편성 기준) 참여자 1인당 10만원

나. 참여자 인건비 사용기준

- 참여자 인건비(최저임금 이상) 및 4대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6

기 타

-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심사결과 최종선정 될 경우, 사업비 교부 예정이며 사업제안시 사업수행기관 자격, 요건, 활동분야, 일자리기준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일자리복지과(☎031-590-2737)로 문의하여 주십시오.